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민홍철・이재강・박용갑

문대림 • 이연희 • 한준호

정준호 • 한정애 • 이건태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버스 교체비용 및 설비 장착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일반좌석 축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법률 제 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담비율"을 "부담비율, 재정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	④ <u>다</u>			
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	하는			
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u>부</u> 담비율, 재정지원			
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	<u>의 기준 및 방법 등</u>			
자치단체의 <u>부담비율</u> 은 교통약				
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1. 제3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			
	<u>한다)하는 경우</u>			
<u><신 설></u>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u>보전이 필요한 경우</u>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